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5. 25 선고 2020가단1021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**원고**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

담당변호사 홍성용

**피고**B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, 모 D

**변론 종결**2021. 1. 26.

**판결 선고**2021. 5. 25.

## 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,  
가. 피고와 E 사이에 2018. 6. 1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 
나. 피고는 E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8. 6. 12. 접수 제20578호로 마친  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4. 1. 29. E에게 100,000,000원을 만기일을 2019. 1. 29.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
나. 원고는 E이 위 대여금을 만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929호로 E에 대하여 11,114,167원 및 그 중 원금인 10,825,317원에 대하여 2019. 2. 19.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9.17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. 2. 28.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.

다. 한편, E은 2018. 6. 11.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.) 중 E의 소유지분인 1/3 지분(이하 '이 사건 공유지분'이라 한다.)에 관하여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.)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8. 6. 12. 접수 제20578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.)를 마쳐주었다.

라.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8. 6. 11. 당시 E은 다음과 같이 소극재산인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였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라북도 군산시 F<br>답 469m <sup>2</sup> (이<br>사건 부동산) 중<br>지분 3분의 1 | 13,772,9661) 갑 제7호증의<br>1, 2 기재와 같이 2020. 12.<br>24. 기준 E의 소유지분 1/7에<br>대한 공시지가임 | 갑3,6   | G               | 557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0.12.24.<br>사실조회회보       |
| 전라북도 군산시<br>H 답 26m <sup>2</sup> 중<br>지분 7분의 1                | 119,2282) 갑 제8호증의 1, 2<br>기재와 같이 2020. 12. 24.<br>기준 E의 소유지분 1/7에 대한<br>공시지가임    | 갑7-1,2 | I               | 미회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라북도 군산시 J<br>답 37m <sup>2</sup> 중 지분<br>7분의 1                | 169,6713) 갑 제9호증의 1, 2<br>기재와 같이 2020. 12. 24.<br>기준 E의 소유지분 1/7에 대한<br>공시지가임    | 갑8-1,2 | A<br>은행<br>(원고) | 10,825,3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갑1-4(미회수<br>원금)             |
| 전라북도 군산시<br>K 답 135m <sup>2</sup> 중<br>지분 7분의 1               | 420,4284) 갑 제10호증의 1<br>기재와 같이 2021. 1. 20. 기준<br>E의 L조합에 대한 채무액임                | 갑9-1,2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L               | 1,700,000,0005) 갑<br>제10호증의 2 기재와 같이<br>2021. 1. 21. 기준 E의<br>M조합에 대한 채무액임 | 2021.01.20.<br>사실조회회신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M               | 1,200,000,000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1.01.21.<br>금융거래정보<br>회신 |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군산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, 이 법원의 N, G 주식회사, M조합, L조합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, 이 법원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사해행위 성립 및 그 취소와 원상회복

### 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존재하고 있던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### 나. 사해행위의 성립

위 인정사실과 같이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E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### 다.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판사유상호

별지

- 1) 갑 제7호증의 1, 2 기재와 같이 2020. 12. 24. 기준 E의 소유지분 1/7에 대한 공시지가임
- 2) 갑 제8호증의 1, 2 기재와 같이 2020. 12. 24. 기준 E의 소유지분 1/7에 대한 공시지가임
- 3) 갑 제9호증의 1, 2 기재와 같이 2020. 12. 24. 기준 E의 소유지분 1/7에 대한 공시지가임
- 4) 갑 제10호증의 1 기재와 같이 2021. 1. 20. 기준 E의 L조합에 대한 채무액임
- 5) 갑 제10호증의 2 기재와 같이 2021. 1. 21. 기준 E의 M조합에 대한 채무액임